

假處分 取消申請이 認定되지 않았던 事例

(大阪地裁 59. 8. 30 判決; 昭和 59年(モ) 2765號)

1. 事件概要

1) 本件은 被申請人이 申請한 別件의 假處分 申請事件에 있어서 被申請人이, 本件 申請人의 製造에 關係되는 荷役機械가 被申請人 所有의 特許權을 侵害함으로써 그 製造, 販賣 등의 禁止를 要求하였던 바 被申請人의 申請을 容認하는 假處分決定이 되었다.

2) 申請人은 上記의 假處分決定의 取消을 要求, 申請人이 本件 假處분에 따라 입은 被害는 被申請人이 本件 假處분이 取消된 것에 따라 입은 損害에 比해서 매우 크고 異常損害라하는 適切함이 있고 또 被申請人의 權利는 金錢的 補償에 따라 그 終局의 目的을 達成하였다고 하는 適切함이 있으므로 本件에는 假處分을 取消할 特別事情이 있다고 主張했다.

2. 判決의 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 따라 申請人의 主張을 却下했다. 즉, 申請人의 本件製品의 賣上高는 總賣上高의 10.9%에 머물렀고 더구나 代替品의 製造販賣에 따라 賣上高의 減少에 防止가 期待되었고, 또 本件 假處分の 影響은 다른 製品에 波及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本件處分을 維持하는 것에 따라 申請人이 입은 損害는 被申請人이 申請人보다 會社의 規模, 總賣上高 및 本件特許의 實施品의 賣上高와 함께 크고, 申請人의 本件製品의 賣上高는 被申請人의 本件特許의 實施品賣上高의 1割程度로 있다는 것의 事情

을 考慮해서도 역시 假處분에 따라 通常 입은 損害에 그친 것으로 認定하는 것이 該當되고 申請人이 倒産하는 等으로 해서 異常損害가 생긴 것으로는 認定하기 어렵다. 다음에 金錢補償의 可能性에 對해서 檢討하면 申請人和 被申請人의 販路는 國內外에서 競合하는 것으로 있고, 申請人의 本件 製品의 單位는 被申請人의 製品보다 奏價로 있는 것, 申請人의 本件製品의 賣上高는 2億4000萬圓이 넘었고, 販賣先은 大部分 海外에 있는 것으로 비추어보면, 本件 假處分을 取消한 次에 被申請人은 申請人과의 販賣競爭에 따라 特別히 海外에 있어서 販賣의 困難, 販賣數量의 減少, 價格의 引下 혹은 販路의 損失 등의 損害를 입은 것이 推測되고 本件 特許權 侵害에 따른 損害는 多方面으로 廣範圍하고도 繼續적으로 생기고 그 金額의 把握, 立證이 뚜렷하게 困難하고 結局 申請人의 被保全權利는 金錢的 補償을 가지고서 는 이것을 滿足시키는 것으로는 認定될 수 없다.

3. 論評

判決에 나타난 事實에서 보면 한편, 本件 假處分을 維持하는 것에 따라 申請人이 입은 損害의 幅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特許權者는 法律에 따라 特許權의 侵害에 對해서 保護되고 있는 것으로 있으므로 假處분이 取消된 것은 判決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相對方(本件에서는 申請人)에게 假處분에 따른 通常입은 損害를 넘어서 異常損害가 생기는 경우 等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